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장종태 · 정준호
민형배 · 양부남 · 박희승
안도걸 · 이해민 · 정진욱
최혁진 · 전진숙 · 박지혜
박균택 · 어기구 · 한민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,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· 합성물 · 가공물 또는 복제물,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성착취물(이하 “불법촬영물등”이라 한다)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,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,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

를」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 제1항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, 영상물, 음성물, 복제물, 편집물, 합성물, 가공물, 개인정보, 허위사실 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~ ⑥ (생 략)	<u>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 영물, 영상물, 음성물, 복제물, 편집물, 합성물, 가공물, 개인 정보, 허위사실 등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